

1.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고시

농림수산부는 우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을 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3-61호 : 93. 12. 27)하였다.

이 고시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별로 품질관리 우수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는 94년 12월 26일까지 개정된 고시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동물용의약품등 약효 재평가의 결과에 따른 품목 정비

농림수산부의 약효 재평가 결과에 따른 품목정비 지시(위생5158 6-939 : 93. 9. 14)에 따라 우리 협회는 제조(수입)업체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계획과 합리적인 부표작성 방안을 수립하여 품목정비 자료를 취합 중이며 협의된 작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품목정비 계획

구 분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기 타
품목 장비서류 협회 제출기한	94년 1월 31일	94년 2월 28일	94년 3월 31일
분류번호(동물약품분류집상)	• 42100000- 42601902 • 4290000- 42909005	• 41100000- 41500000	• 4270000- 42810002
품목정비 동물약품	• 페니실린계 • 펩타이드계 •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 마크로라이드계 • 콜로리페니클리계 • 테트라사이클린계 • 세팔로스포린계 • 기타 항생물질제제	• 살피제 • 살피제와 트리메토 프린 험제 • 살피제 혼·복합제 • 혼합 항생·항균물 질제제 • 혼합 항균제 혼복합제	• 복합 항생·항균물 질제제 • 혼합 항생·항균물 질제제

2) 품목 정비자료 작성 지침

가. 제품명

-동물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4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자료 취합시 확인 사항

⑧ 축종별로 구분(가축용, 양봉용, 양점용, 수산용, 애완용)되어 있는가
⑨ 농림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없다고 안정한 제제 인가
⑩ 3개이상 항생제가 혼합된 제품은 아닌가
⑪ 허위 과장된 명칭은 아닌가
⑫ 동물약품 이외의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명은 아닌가
⑬ 배합성분의 단위 또는 수량을 표시한 경우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⑭ 상이한 제형으로 오인할 명칭은 아닌가
⑮ 적용증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한 명칭은 아닌가
⑯ 2종 이상의 유효성분이 혼합된 제제로 성분 일부만을 나타내는 명칭은 아닌가
⑰ 외국상표로서 사용을 허용한 명칭 인가
⑱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가

나. 원료약품 및 분량

-동물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자료 취합시 확인사항

①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 명칭 또는 일반명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② 유효성분과 부형제 등이 배합목적으로 순서 있게 전부 표시되어 있는가
③ 원료 분량의 표기는 적절한가
④ 유효성분은 역가 또는 실 함량으로 되어 있는가

다. 성상 및 제조방법

-동물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자료 취합시 확인 사항

① 공정서에 준하여 기재되어 있는가
② 제조과정이 합리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라. 효능·효과

-동물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자료 취합시 확인 사항

⑥ 명확한 근거에 의한 약리 작용이 의약적 용어(질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⑦ 막연하고 광범위한 포괄적·계통적 질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⑧ 복합제제의 경우 개개 성분에 대한 효능·효과가 총망라되어 있지 않은가
⑨ 복합제제의 경우 임상근거가 없는 경우 주성분의 효능·효과만이 기재되어 있는가
⑩ 대상 동물별, 성장시기별로 기재되어 있는가
⑪ 「첨가자침」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 성장촉진, 사료효율증진, 증체율 향상등에 주된 효능·효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⑫ 제형·투여경로를 감안하여 투여 목적에 정확한 효능·효과가 기재되어 있는가
⑬ 근거자료는 약전, 전문서적, 학술지, 공인기관의 시험자료, 제조국 허가서류 등으로 충실히 신뢰 할만한 것인가
⑭ 사용용어는 적절하고 한글화 되어 있는가

마. 용법 및 용량

-동물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자료 취합시 확인 사항

⑤ 약리학적으로 타당하고 양축농가가 알아보기 쉽게 기재되어 있는가
⑥ 제시된 효능·효과에 대한 투여량, 투약간격, 투약기간이 체중단위, 성장시기별 사육단위별로 제시되어 있는가
⑦ 용량이 치료와 예방용으로 구분 제시되어 있는가
⑧ 근거자료는 약전, 전문서적, 학술지, 공인기관의 시험자료, 제조국 허가서류 등으로 충실히 신뢰 할만한 것인가

바. 포장단위

-동물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자료 취합시 확인 사항

⑨ 가급적 소포장 단위로 취급이 용이 하도록 되어 있는가
⑩ 내용량 기준으로 용법·용량에 적합하게 검토 기재 되었는가

사.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자료 취합시 확인 사항

⑪ 제품의 유효기간이 원료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검토 기재되어 있는가
⑫ 근거자료는 약전, 전문서적, 학술지, 공인기관의 시험자료, 제조국 허가서류 등으로 충실히 신뢰 할만한 것인가

아. 주의사항

⑬ 「첨가자침」에 수재되어 있는 용법 용량인 제품인 경우 허약기간이 7일 인가
⑭ 효능·효과에 따라 투여용량이 다른 경우 투여용량별 허약기간이 제시 되었는가
⑮ 최대 투여용량별로 식육과 축산 생산물(알, 것)에서의 허약기간이 제시되어 있는가
⑯ 부작용은 구체적으로 검토 기재되어 있는가
⑰ 금기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 기재되어 있는가
⑱ 사용방법의 주의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 기재되어 있는가 (동물약품 10대 안전수칙증 적당한 주의사항이 반영되어 있는가)
⑲ 주의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 기재되어 있는가
⑳ 근거자료는 약전, 전문서적, 학술지, 공인기관의 시험자료, 제조국 허가서류 등으로 충실히 신뢰 할만한 것인가

자. 기준 및 시험방법

-동물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별지3」 제3항 검토
-자료 취합시 확인 사항

④ 사용원료의 규격(함량)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⑤ 제품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⑥ 제품과 원료의 시험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차. 비 고

-자료 취합시 확인 사항

④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등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가
